

다주택 처분 약속서

(2018.10.15 이후 서울보증보험 담보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인용)

(주)하나은행 귀중

본인은 배우자와의 합산주택 보유수가 2주택 이상으로 아래 대출 (계좌번호 :) 관련 연장일로부터 2년 이내(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)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(소유권 이전 완료를 말함. 이하 같음)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.

또한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본인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1. 2년 이내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
2.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기 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

아 래

본 인	
대출계좌번호	
주 택 보 유 수	본 인 () 주택 / 배우자 () 주택

년 월 일

생년월일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